KS표시 인증 심사기준

해당규격번호	KS F 2701
해당규격명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제정년월일	1986 년 12 월 19 일
개정년월일	1999 년 07 월 09 일

기 술 표 준 원

Ⅰ. 표준화 일반 : 산업표준화법 참조

Ⅱ.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 / 주요자재명	구비요건			
	검 사 항 목	자재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행 사항
1. 석회질원료 가. 석회 나. 시멘트 2. 규산질원료 3. 기포제 4. 혼화재료	1) CaO함량 2) 입도 3) 불순물함량 1) 분말도 2) 안정도 3) 강도 1) 화학성분 2) 입도 3) 유해성분의 허용량 4) 슬러지의 비중 (습식분쇄의 경우) 1) 화학성분 1) 화학성분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 1. 규격표시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Ⅲ. 공정관리

심사사항 / 주요공정명	구비요건			
	검사또는 관리항목	검사또는공정 관리방법	이행 사항	제조작업표준
1. 배합 및 혼합 (비빔) 2. 타설 3. 탈형까지의 양생 4. 탈형 및 절단 5. 양생 6. 마감	<관리항목> 1) 배합 및 혼합 (비빔)시간 <관리항목> 1) 타설량 <관리항목> 1) 양생시간 2) 양생온도 <관리항목> 1) 탈형시기 <관리항목> 1) 양생시간 2) 양생온도 3) 압력 <검사항목> 1) 겉모양 2) 치수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하거나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Ⅳ.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 검사항목	구 비 요 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1. 겉모양 2. 치수 3. 절건비중 4. 압축강도 5. 단열성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규격의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ㅇ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ㅇ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시험검사자가 규격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1. 중간검사와 겹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5항은 외부의뢰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Ⅴ.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배합, 혼합(비빔) 설비 2. 성형설비 3. 절단설비 4. 오토클레이브 양생설비 5. 마감설비	ㅇ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ㅇ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공정관리 단서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Ⅵ. 검사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치수측정설비 2. 절건비중 시험설비 3. 압축강도 시험설비 4. 단열성 시험설비	ㅇ 해당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는 교정검사를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 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 4항의 시험설비는 외부 시험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의뢰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Ⅶ.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 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		비 고
				Ac	Re	
1	겉모양	재고량	3	0	1	현장또는 외부시험
2	치수	“	3	0	1	“
3	절건비중	“	3	0	1	외부시험
4	압축강도	“	3	0	1	“
5	단열성	“	1	0	1	“
비고 : 시판품조사시 단열성검사는 새로운 설계, 개조 및 기타 생산조건 변경등에 따라 업체에서 외부시험 또는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그 시험치가 KS 수준 이상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Ⅷ. 규격표시의 방법

상품의 단위	표 시 장 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제품 또는 보장마다	잘보이는곳	각인 또는 스탬핑	1. 규격표시도표 : KS마크 지름 10㎜이상 2. 규격명 및 규격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인증기관명 7. KS F 2701의 9항 표시사항

Ⅸ. 허가의 구분

한국산업규격번호	규 격 명	종류 또는 등급
KS F 2701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